「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2890

발의연월일 : 2026. 10. 19.
발의의원 : 김이석 의원 등 12인

1. 주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이에 달성군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3. 결의문 : 붙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오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힘써 왔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만 담겨 있다. 현행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의회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견제·감시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적극 협력하여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운영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윤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6. 10.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